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0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5.

발 의 자:김승원·김용민·황정아

안태준 • 이기헌 • 김원이

이건태 · 임호선 · 김준형

이원택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 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가족 등 여러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.

이에 2인 이상의 공유재산에 있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경우로 한정한다"를 "자를 말하고,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합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)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조합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조합의 임원) ① 조합은	제41조(조합의 임원) ①
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	
한 건축물 또는 토지(재건축사	
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	
속토지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	
서 같다)를 소유한 자[하나의	
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	
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	
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(2인 이	
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	
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	
경우로 한정한다] 중 다음 각	자를 말하고, 가장 많은 지분을
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	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
조합장 1명과 이사, 감사를 임	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그 다
원으로 둔다. 이 경우 조합장은	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
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	를 말한다
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	
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	
거주(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	
영업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	
제43조에서 같다)하여야 한다.	

1. • 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